

신규 전문무역상사 모집 관련 FAQ

<제도 소개>

1. 전문무역상사란 무엇인가요?

-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선정)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2024. 3. 8., 일부개정)

제7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① 영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2.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수출 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자

② 영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③ 영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4.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상 신용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지정되나요?

-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서 지정됨
 - 신규 모집은 연 1회 (4~5월경) 진행되며,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공고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및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를 통해서 모집 공고문 확인 가능
- ※ 문의사항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576, 5238)

3.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해야 하나요?

- 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지정되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입 여부와는 무관함** (회원사, 비회원사 모두 신청 가능)

4.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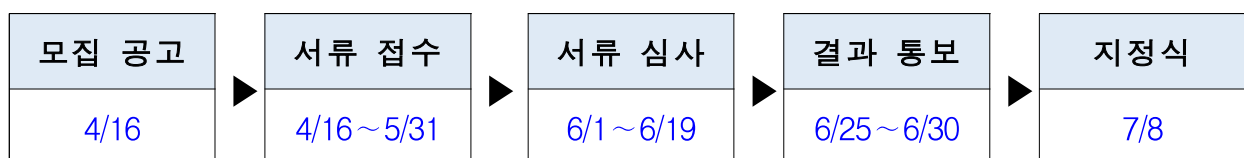
- 전문무역상사 신청·지정 등에 있어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으나**, 소관 지자체에서 지방세법에 의거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함

<모집 절차 및 규모>

6. 신규 전문무역상사 모집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7.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나요?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 신청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모집 규모를 확대하여 지정 예정

8. 신규 지정되면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지정 기간은 3개년으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9년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2026. 7. 1. ~ 2029. 6. 30.)
- 단,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년 후에 지정 자격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1. 전년도 수출 실적(미화 50만불 이상) 및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20%이상)
 -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법행위 등 전문무역상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위해서는 신규 지정 신청 절차와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 필요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

9. '(1번 요건)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이상 & 수출실적 중 他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업체'

- ① 수출 실적과 ② 대행 수출 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출 실적

- (요건)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1백만 달러 이상

(사례1) 25년도 수출 100만 달러

→ **요건 충족** (전년도 1백만 달러 이상)

(사례2) 25년도 수출 50만 달러, 24년도 100만 달러, 23년도 150만 달러

→ **요건 충족** (3년간 연평균 1백만 달러 이상)

(사례3) 26년도 수출 250만 달러, 25년도 10만 달러

→ **요건 불충족** (당해년도 수출 실적은 미포함됨)

② 대행 수출 비중 요건

- (요건)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출 비중* 20% 이상 충족

*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은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에서 B, C, D¹⁾에 해당하는 수출 2. 용역/전자적무채물 수출, 외화영수부 수출, 중계무역 등 기타 수출의 경우만 인정.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은 제외

¹⁾ 수출신고 수출자구분 : B-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C-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D-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사례1) 25년도 수출 150만 달러, 25년도 대행 수출 30만 달러

→ **요건 충족** (수출 실적 충족 + 대행 수출 비중 충족)

(사례1) 23~25년도 연평균 수출 100만 달러, 23~25년도 연평균 대행 수출 2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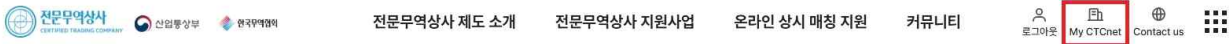
→ **요건 충족** (수출 실적 충족 + 대행 수출 비중 충족)

- 대행수출 실적의 집계는 신청기업의 **전체 수출 실적에서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에서 B, C, D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을 집계한 후 2. 제조자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에 대해서만 자동 집계됨**
- 만약 ‘수출자 구분’에서 B, C, D로 신고한 수출의 경우에도 **제조자가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미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해당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해당 수출 품목의 제조자가 중소·중견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인정 가능
- 이외 전문무역상사 지정 자격별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출서류 안내(필독)’ 파일을 참조해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모든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X)**

<지정서 발급>

10.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 발급 가능.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로그인 후 MyCTCnet → 지정서 다운로드(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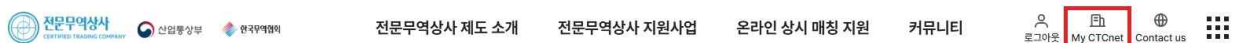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명단 및 연락처 정보>

11.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명단 및 연락처 정보 확인이 가능한가요?

-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 명단은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를 통해서 확인 가능 (전문무역상사 소개 - 전문무역상사 기업 검색)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 상 개별 기업 정보 화면에서 ‘매칭 신청’ 기능으로 연락 가능
 - (발신자) 온라인 상시 매칭 지원 - 전문무역상사 검색 - 매칭 신청 버튼



- (수신자) 로그인 - My CTCnet (우측 상단) - 온라인 매칭 신청 내역



<지정 인센티브>

12.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나요?

- 현재 유망 제조기업 매칭, 수출보험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구분	주요내용	우대사항	비 고
유망기업 매칭	제조기업과의 매칭 상담	매칭상담회 기회 제공 온라인 홈페이지 연계 국내 기업 발굴 및 바이어 매칭 지원	
관세 세정지원	관세 세정 관련 혜택 제공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연기 수출용원재료 조기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중소기업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보험료 40% 할인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증한도 확대(1.5배)	
마케팅	수출촉진 지원사업	9개 지원 항목 중 선택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개별참가 등)	신청 시 가점	
	동반수출 지원	전문무역상사 컨소시엄 마케팅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진출희망국 소재 무역관 연계 바이어 발굴, 브랜드 홍보 지원	
	바이코리아(온라인) 홍보 지원	KOTRA 바이코리아 내에 전문무역상사 전용 상품관 지원	
	해외 유망 전시 전문무역상사 특별관 운영	특별관 참가비 지원	
	국내상담·전시 전문무역상사 특별관 운영	바이어 매칭 및 상담 지원	
기타	내수기업 DB 제공	유망 내수기업 온라인 매칭 지원	
	회의공간 지원	KITA Business Center 무료 이용	
	정부 포상	전문무역상사 포상 추천	
	무역정보 제공	무역통상뉴스, 뉴스레터 발송	

※ 인센티브는 추후 변경 가능

<기업 문의사항>

13. 해외 현지기업에 수출한 후 현지기업을 통한 해외정부 또는 국제 기구의 조달 납품 실적도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으로 인정되나요?

- 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만 지정이 가능하며, 동 규정 제7조 ③항 4호는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현지기업을 통한 납품은 인정되지 않음

- 단, 해외정부의 공기업, 공공기관 등 해외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인정. 또한, 해외정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정한 납품 업체를 통해서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
- 다만 해외 현지기업을 통한 납품 실적은 기타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조 ①항 1~2호에 따라 회사의 전체 수출실적과 타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 기준을 충족할 경우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가능함

14. 주한미군에 납품 실적도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조달 납품 실적으로 인정받아 전문무역상사 지정될 수 있나요?

-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등의 지원이 주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목적으로 지정요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전제가 되어야함. 주한미군에 납품 실적은 수출이 아닌 ‘외화획득’ 이기 때문에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충족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15. 재외동포기업으로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받고자 하는데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나 딜러를 통해서 한국제품을 구매한 실적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로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법인 또는 현지 딜러를 통해서 내국 거래 형태로 한국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